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7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도읍 • 권성동 • 박대출

구자근・조승환・곽규택

주진우 • 이성권 • 정희용

조지연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3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4조(「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5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6조(「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7조(「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6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
록) ① ~ ③ (생 략)	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	
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u>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u>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u>
또는 피한정후견인	<u>견인</u>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발기인) ① (생 략)	제4조(발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②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	
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
격요건 등) ① (생 략)	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
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	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u> , 피한정후견인	1. <u>피성년후견인</u>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